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문영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55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5월 25일

발 의 자 :문영민 의원(1명)

찬 성 자 :권순선, 김기덕, 김제리,
김태수, 박순규, 이병도,
이영실, 전석기, 최웅식,
황규복 의원(10명)

1. 제안이유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대상)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는 법령과 달리 ‘저소득층 등’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조례에 명시된 ‘저소득층’에만 한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취약계층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조례에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정의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여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원격교육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함.(안 제2조제4호)
- 나. 현행 조항에서 규정하는 ‘장애학생’을 삭제하고 이를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포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제10조의 제목 “(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u>”이란 「<u>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u>」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p>
<p>제10조(<u>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u>) 교육감은 <u>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u>을 적극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10조(<u>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u>) ----- <u>원격수업</u>을 운영하는 경우 <u>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u>----- -----.</p>